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조정훈·박충권·서천호
김대식·김용태·강명구
인요한·김미애·정성국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

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78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학생은 대안학교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이하 “대안교육이용권”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입학금·수업료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이용권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준용하되,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78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④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078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학생은 대안학교에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 (이하 “대안교육이용권”이라 한 다)을 제시하고 입학금·수업 료 및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이용권 의 발급·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를 준용하되,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로 본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